



"기획은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2. 1. 31.
제 공 자 : 농림수산물부 친환경농업과
과 장 : 이 정 형
사무관 : 박 원 태
전 화 : 500-2133
쪽 수 : 2P
별첨자료 : 있음(1P)

이 자료는 []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대폭 확대 한다

- 유기·무농약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-

〈 주 요 내 용 〉

◇ 친환경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보전 현실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'12년부터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

○ 지급단가 인상

- 논 : 무농약 307천원/ha → 400, 유기 392천원/ha → 600
- 밭 : 무농약 674천원/ha → 1,000, 유기 794천원/ha → 1,200

○ 지급기간 연장

- 유기인증 직불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

□ 농림수산물식품부는 한·미 FTA 비준 등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,

○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'1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※ '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함에 따라 저농약 인증농가의 무농약 이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어 지원 확대를 추진

□ 직불금 지급단가는 친환경농법과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를 감안하여 무농약, 유기인증을 대상으로 50% 수준 인상하였다.

○ 논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는 필지는 ha당 307천원에서 4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302천원에서 600천원으로 인상하고,

○ 밭의 경우, 무농약 재배필지는 ha당 674천원에서 1,0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794천원에서 1,200천원으로 인상함

□ 또한, 지급기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 인증에 한해 종전 3년(3회) 지급하던 것을 5년(5회)으로 연장하여 지급 한다.

□ 농식품부는 이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업 확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

○ 향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인증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, 단체인증 농가 중 일정비율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 농가 전체 농가에 대해 당해 연도 직불금 감액 지급 검토 등

참고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

□ 지원내용

-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

□ 사업대상자

-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
 - * 당해 연도 직불금 감액지급 대상자 및 감액범위 추후 결정

□ 지원조건

- 지원 규모 : 50,595백만원 (국고 100%)
- 사업주관기관 : 지자체(시장·군수·구청장), 국고 100%
- 지급단가
 - 논 : 유기 600천원/ha, 무농약 400, 저농약 217
 - 밭 : 유기 1,200천원/ha, 무농약 1,000, 저농약 524
- 농가당 지급한도 : 0.1 ~ 5.0ha
- 지급기간 : 최초 지급연도로 부터 필지별로 3년간(3회) 지급하되, 유기 인증의 경우는 5년간(5회) 지급

□ 사업 추진 절차

- 사업신청(3.1 ~ 3.31, 읍면동) → 사업대상자 선정(4.1 ~ 5.10, 시군구) → 사업량 배정통보(5.10 ~ 5.20, 농식품부) → 이행점검(5.20 ~ 10.31, 인증기관) → 사업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(11.1 ~ 11.15, 시도) → 보조금 지급(11.16 ~ 12.31)